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06호)

기획재정부에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 인하 적용기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공고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제안배경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과세물품당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위축된 소비를 회복시키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 30% 인하 조치를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II. 주요내용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기간(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5로 인하하는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간 연장

III.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1년 6월 11일

(2) 제출방법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환경에너지세제과 , 변유호
- 전자우편 : YooHo471@korea.kr, namwonwoo@korea.kr
- 전화 : 044-215-4331
- 팩스 : 044-215-8069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조문별제개정이유서

[붙임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Contact



김승옥 관세전문가
T 02-6011-3046
E sokim@esein.co.kr



안성호 관세전문가
T 070-4353-1529
E shahn@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1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